고시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535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7조제3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09호, 2023.3.1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15일 **국토교통부장관**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
5층 이하	40 m² 이하	1,995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108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036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46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1,99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1,975
	125㎡ 초과	1,946

6~10층 이하	40 m² 이 하	2,135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256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79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83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3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14
	125㎡ 초과	2,083
11~15층 이하	40 m² া চী	2,003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116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044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54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1,999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1,983
	125㎡ 초과	1,954
	40 m² া ই	2,025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140
16~25층 이하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067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1,976
	85m² 초과 ~ 105m² 이하	2,02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06
	125㎡ 초과	1,976
	40 m² া ই	2,058
26~30층 이하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175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00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08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54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38
	125㎡ 초과	2,008
31~35층 이하	40 m² 이하	2,090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208
	50m² 초과 ~ 60m² 이하	2,133

	60m² 초과 ~ 85m² 이하	2,039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86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70
	125m² 초과	2,039
36~40층 이하	40 m² 이하	2,123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243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66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71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19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02
	125m² 초과	2,071
	40 m² 이하	2,151
41~45층 이하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273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96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99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47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30
	125m² 초과	2,099
46~49층 이하	40 m² 이하	2,218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2,344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264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164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214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96
	125m² 초과	2,164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지하층건축비 (지하층면적기준)

947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2034

*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 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